

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등 보고

문서번호

20 . . 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(건전경영팀)보험감독국, 검사각국

○○ 보험회사 대표이사 (인)

「보험업법」 제111조제1항제2호, 「보험업법시행령」 제57조제2항 및 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7-13조의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자산 무상양도 등을 한 사실이 있어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3-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공익법인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명칭	설립근거 법률	설립일	설립자명	대표자명	임원		
					성명	지위	보험회사와의 관계
설립당시 재산	보고시점 재산	보험회사 출연금	기타 계열사 명칭	출연금 출연금액	특수관계인 해당 사유	설립목적 및 주요 활동	

※ 작성요령

- ① ‘명칭’은 정관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
- ② ‘법인 임원’에는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기재
- ③ ‘보험회사와의 관계’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직위를 기재
- ④ ‘재산’은 설립 당시 또는 보고시점 당시 공익법인의 현금자산 및 현물자산 평가액의 총액을 기재
- ⑤ ‘보험회사 출연금’은 보험회사가 동 법인 설립당시부터 보고시점까지 출연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
- ⑥ ‘기타 계열사 출연금’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동 법인 설립당시부터 보고시점까지 출연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
- ⑦ ‘특수관계인 해당사유’는 「보험업법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해당하는 각 ‘호’를 기재

2. 자산의 무상양도등 현황

일자	거래유형	금액	거래사유 및 자금용도	주요 특별약정	비고

※ 작성요령

- ① ‘거래유형’란에는 자산의 무상양도, 매매, 교환, 신용공여 중 거래형태 기재
- ② ‘금액’란에는 무상양도 또는 신용공여한 금액이나, 매매·교환으로 지급·수령한 금액 기재
- ③ ‘주요 특별약정’ 란에는 거래 상대방인 공익법인과 체결한 거래조건 등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재
- ④ ‘비고’ 란에는 (i) 무상양도인 경우 양도대상 자산 종류 등 기재 (ii)신용공여인 경우 신용공여 조건 [금리(수수료), 상환조건, 만기, 담보 종류 및 평가액 등] 및 현저히 불리한 조건인 이유 기재 (iii) 교환·매매인 경우는 교환·매매대상 및 교환·매매 조건 등을 기재

<첨부서류>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승인한 보험회사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

※ 유의사항

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한 보험회사는 규정 제7-13조의제2항에 따라 이 서식에 의한 보고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당해 공익법인이 발행한 후원금 수입내역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